

[서식 예] 이사장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

소 장

원 고 1. ○①○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○②○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3. ○③○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〈〉〈상가〈〉〈조합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
이사장 ���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의 20○○. ○○. ○.자 대의원총회에서 소외 ◈◈◈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
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들은 ◇◇상가◇◇조합 설립당시 피고조합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고, 피고조합은 20○○. ○. ○. 설립허가를 받아 20○○. ○. ○. 그 등기를 마친 법인입니다. 20○○. ○. ○.자로 피고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소외 ●●●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20○○. ○. ○. 되임하였습니다.
- 2. 그리하여 20○○. ○○. ○.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소외 ◈◈◈를 이사장으로 선임 결의한 바 있습니다.
- 3. 그러나 피고조합의 정관 제55조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이사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. 그런데 20○○. ○○. ○. 이사장으로 선임 결의된 소외 ◈◆◆는 ○○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까지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사장으로 선임결의 하였습니다. 이것은 명백하게 정관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장으로 선임결의 한 것입니다.
- 4. 그러므로 이사장의 선임과 퇴임에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인 원고들은 이사장의 선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증 명 방 법

1. 갑 제1호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1. 갑 제2호증조합정관

첨 부 서 류

파산선고 심판서

1. 위 증명방법 각1통

1. 갑 제3호증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

2000. 0. 0.

위 원고 1. ○①○ (서명 또는 날인)

2. ○②○ (서명 또는 날인)

3. ○③○ (서명 또는 날인)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효 기 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·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, 조합 내의 이사장 선		
기 타			

※ (1) 관 할

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 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,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 한편, 외국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



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·영업소 또는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